

원희룡 장관,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점검

- 100일(5.23~8.30) 집중단속 중 지방청 찾아 단속 직원 독려 -
- 임기 내 건설현장 정상화 의지 밝히며, 건설사에도 협조 촉구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2일(월)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, LH·도로공사·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.
- 국토교통부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, 5.23~6.8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, 그 중 33개 (42.8%)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,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.
 -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,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.4%에 달했다.
- 원 장관은 “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,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,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”며,
 - 단속 직원들에게 “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”을 당부하는 한편, 건설사에 “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 시공”을 주문했다.
-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며, 단속이 마무리되면,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 - 한편,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「건설산업법」 개정안*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으며,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
* 장경태 의원안(21.9 발의), 허영 의원안(21.10 발의), 김정재 의원안(22.8)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	책임자	팀 장	조숙현 (044-201-3518)
		담당자	사무관	신기표 (044-201-3572)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

참고 1

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 결과(5.23~6.8)

- (단속기간) '23. 5. 23 ~ 6. 8 < 20일 >
- (단속현장) 총 77개 현장 < 진행률 15.1% >
- (적발현장) 33개 현장 < 적발률 42.8% >
- (적발업체) 총 42개社 < 원청 28개社, 하청 14개社 >
- (적발건수) 총 58건
 - ① 무자격자*에 대한 하도급 42건 < 전체 단속 건수의 72.4% >
 - * 건설업 무등록업체 32개社, 해당 공종 무자격 업체 11개社
 - ② 하청이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 16건

<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(5.23~6.8) >

구분	누계('23.5.23~6.8)	서울청	원주청	대전청	익산청	부산청
단속 현장 수	77개	20개	7개	17개	15개	18개
적발 현장 수	33개	7개	3개	10개	6개	7개
불법하도급 업체 수 (원청/하청)	42개 (28/14)	7개 (2/5)	6개 (6/-)	12개 (9/3)	8개 (3/5)	9개 (8/1)
불법하도급 건수	58건	17건	3건	19건	11건	8건
무자격자 하도급	42건	10건	3건	16건	6건	7건
무등록 시공업체 수 ¹⁾	32개	10개	2개	12개	6개	2개
무자격 시공업체 수 ²⁾	11개	-	1개	5개	-	5개
재하도급 (중복 ³⁾)	16건 (11건)	7건 (7건)	-	3건 (1건)	5건 (3건)	1건 (-)

- 1) 무자격자 하도급의 수급인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
- 2) 무자격자 하도급의 수급인으로 해당 공종이 아닌 공종을 등록한 자
- 3) 하청이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

※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

①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

- 하도급을 준 업체 :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% 이내 과징금 /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-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자 :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- 해당 공종의 자격없이 하도급을 받은 자 :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% 이내 과징금

② 재하도급

- 하도급을 준 업체 :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% 이내 과징금 /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①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

-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A 건설사는 미장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에게, 금속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C에게, 수장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D에게, 철골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E에게 각각 하도급

⇒ A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(4건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결정)

⇒ B, C, D, E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
② 자격이 없는 건설업자에 대한 불법하도급

- 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F 건설사는 방음벽·방진망 설치공사를 지반조성공사업을 등록한 G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

⇒ F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⇒ G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

③ 불법 재하도급

- 연구소 신축공사 중 철골·철콘 공사를 하도급받은 H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도장공사를 도장공사업체인 I 전문건설업체에게, 안전시설공사를 금속공사업체인 J 전문건설업체에게 각각 재하도급

⇒ H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(2건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결정)

④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재하도급

-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은 K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향타기 임대사업자 L에게 지반공사를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

⇒ K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⇒ L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
참고 3

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현황 점검회의 개요

□ 개 요

- (일시/장소) '23. 6. 12(월) 15:00 ~ 16:00 / 대전지방국토관리청
* 위치 : 대전 동구 계족로 447
- (참석자) [국토부] 장관, 건설정책국장, 5개 지방청장
[공공발주자·산하기관] LH·도로공사 사장, 철도공단 부이사장(단속지원 중)
[전문가]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, 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
연구실장,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□ 주요 내용

- ① 집중단속 중간결과 관계기관 공유 및 대국민 발표
- ②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논의

□ 세부 일정(60분)

시간계획	소요	주요 내용	비고
15:00~15:07	7분	▶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	
15:07~15:25	18분	▶ 불법하도급 단속 중간결과 보고	
15:25~15:55	30분	▶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논의	
15:55~16:00	5분	▶ 마무리말씀	